

##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2. 件 名 : 大田直轄市 宗教團體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 添
4. 檢 討 意 見 : 別 添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2年 9月 日

內 務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鄭 泰 益



大田直轄市 宗教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

# 檢 討 報 告 書

1992. 9.

內 務 委 員 會

大田直轄市 宗教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  
檢 討 報 告

本 條例案은 1992. 9. 16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2. 9. 17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 案 理 由

財團法人인 宗教團體가 醫療法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 開設  
許可를 받아 運營하고 있는 醫療業에 대하여 稅制支援하므로서  
宗教團體들의 社會福祉 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2. 主 要 骨 子

가. 課稅免除 對象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財團法人 設立許  
可를 받은 宗教團體가 醫療法 第30條 第2項 第4號 또는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아 醫療業의  
事業用に 供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建築物및 附屬土地(案第2條)

나. 課稅免除 稅目은 取得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로 함.  
(案 第2條)

### 3. 檢 討 意 見

本 條例 制定案은 財團法人인 宗教團體가 醫療法 第30條 第2項 第4號 또는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아 醫療業의 事業用에 供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建築物및 土地에 대해 地方稅法 第7條의 規定에 依據 取得稅를 免除하고 都市計劃稅및 共同施設稅를 免除코자 하는 內容임.

이는 醫療業을 運營하고 있는 宗教團體에 대해 稅制支援을 하므로써 宗教團體들의 社會福祉事業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思料됨.

本 條例에 의한 課稅免除 業務는 課稅 對象을 管轄하는 區廳長에게 委任 處理토록 하는 內容이며,

다만 建物·土地에 대한 課稅免除 稅目에 있어서, 登錄稅가 免除되지 않은 것은 地方稅法 第127條및 同法施行令 第94條에 의한 醫療業 所在가 直轄市인 境遇에는 登錄稅를 課稅하기 때문임.

參考로 現在 大田市の 境遇는 宗教團體에서 運營하고 있는 醫療機關은 없는 實情임.

※ 大田 성모병원은 카톨릭醫大 附屬病院으로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財團法人임.